

대법원 2015. 2. 12 선고 2014다229962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---

## 재판경과

대법원 2015. 2. 12 선고 2014다229962 판결

대구지방법원 2014. 10. 15 선고 2014나301541 판결

## 전문

원고, 상고인A

피고, 피상고인대구광역시 북구

판결 선고2015. 2. 12.

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14. 10. 15. 선고 2014나301541 판결

## 주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## 이유

상고이유를 살펴본다.

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,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,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.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**재판장대법관권순일**

**대법관민일영**

**주심대법관박보영**

**대법관김신**